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7. 15 선고 2020가단12226 판결 [토지매수청구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대한민국

변 론 종 결 2021. 7. 1.

판 결 선 고 2021. 7. 15.

주 문

1. 피고는 별지1 ‘부동산 목록’ 기재 각 토지 중 별지2 ‘도면’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⑤, ⑥, ⑦, ⑧, ⑨, ⑩, ⑪, ⑫, ⑬, ⑭, ⑮, , , , , , ①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및 같은 도면 표시 , , , , , 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에 설치한 군사시설을 철거하고, 위 각 부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별지1 ‘부동산 목록’ 기재 각 토지 중 별지2 ‘도면’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⑤, ⑥, ⑦, ⑧, ⑨, ⑩, ⑪, ⑫, ⑬, ⑭, ⑮, , , , , , ①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및 같은 도면 표시 , , , , , 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에 설치한 군사시설을 철거하고, 별지1 ‘부동산 목록’ 기재 각 토지를

원고에게 인도하라.[청구취지 중 “별지2 ‘도면’ 표시 2, 3, 4, 5, 6, 7,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토지 4,439㎡” 및 “별지2 ‘도면’ 표시 1, 2, 7, 8, 9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토지 3,636㎡”라는 기재는 결국 별지1 ‘부동산 목록’ 기재 각 토지 전부에 해당하여, 무익한 기재로 본다]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별지1 ‘부동산 목록’ 기재 각 토지(이하 ‘원고 토지’라 한다)의 소유자이다.

나. 피고는 원고 토지 중 별지2 ‘도면’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⑤, ⑥, ⑦, ⑧, ⑨, ⑩, ⑪, ⑫, ⑬, ⑭, ⑮, , , , , ①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및 같은 도면 표시 , , , , 의 각 점을

연결한 선내 부분(이하 ‘피고 점유부분’이라 한다)에 유자재진지 3개소, 무자재 진지 6개소, 교통호 약 350m를 설치하여 군사시설로 사용하면서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, 을 제1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점유할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원고 토지 중 피고 점유부분을 점유,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 점유부분에 설치한 유자재진지 3개소, 무자재 진지 6개소, 교통호 약 350m를 철거하고 피고 점유부분 부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나. 다만, 원고는 원고 토지 중 피고 점유부분 외의 토지에 관하여도 피고를 상대로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, 피고가 피고 점유부분 외의 토지까지 점유, 사용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부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,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지충현

별지1

부동산 목록

1. 경기 연천군 B 임야 4,439㎡
2. 경기 연천군 C 임야 3,636㎡. 끝.

별지2

도면



